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2753호

「전기공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취소) 공시송달 공고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자에 대해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대한 행정처분(등록취소)을 추진하고자 하나, 사업장 부존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31일
서울특별시장

1. **공고제목** : 「전기공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2. **공고기간** : 2019.11.4. ~ 2019.11.18. (15일간)
3. **공고대상**

상호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역	행정처분	비고
(주)삼화통신 공업	윤*호	서울 금천구 범안로 19길 14 (독산동)	- 등록기준미달 행정처분 (영업정지1개월) 후 미보완조치	등록취소	※ 청문 일시(사전통지반송) - 일시 : 19.10.23(수), 15::00 - 장소 : 녹색에너지과

4. **법적근거**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4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

5. **안내사항**

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6. **문의사항**

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(☎ 02-2133-3711, FAX 02-2133-10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2760호

도시관리계획(마포구 상수동 355-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55-2번지 외 2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10월 31일
서울특별시장

I. 열람 기간 : 2019. 10. 31. ~ 2019. 11. 14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

II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역세권계획팀 (☎02-2133-6291)

※ 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57)에서도 열람 가능

III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
신설	-	마포구 상수동 355-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마포구 상수동 355-2 번지 외 2필지	-	증) 642.0	642.0	-

□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구역명	면적(㎡)	결정사유
-	마포구 상수동 355-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642.0	•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 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(신설)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.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 성 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주거 지역	소계	642.0	-	642.0	100.0	-
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642.0	감) 635.6	6.4	1.0	-
	준주거지역	-	증) 635.6	635.6	99.0	-

□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결정사유
		기정	변경		
-	마포구 상수동 355-2번지 외 2필지	제2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준주거지역	635.6	•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.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.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 고
		위 치	면적(㎡)	
-	635.6	마포구 상수동 355-2번지 일원	635.6	-

□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획지계획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
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지정용도	비고
신설	지정용도 (1)	상수동 355-2번지 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	불허용도 (A)	

주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.

□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결정(신설)	•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(신설) 하 고자 함.

나.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용적률	건폐율	마포구 상수동 355-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	기본용적률	
	상한용적률	

□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건축물의 밀도 결정(신설)	•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 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건축물의 밀도를 결정(신설)하고자 함.

다. 용적률 적용기준 (의무사항)

구분	적용기준	계획내용	원화내용	비고
공공 기여율	• 기본공공기여율 - 대지면적의 15% 이상 • 추가용적률 - 기본용적률(400%)에서 증가되는 용적률 (87.51%)의 50%(43.76%)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	• 공공임대주택 부족토지 면적 : 146.49㎡(23.04%) ① 기본공공기여율 : 95.81㎡(15.07%) ② 추가공공기여율 : 50.68㎡(7.97%) → ① + ② = 146.49㎡(23.04%)	기본 용적률 400% 부여 상한 용적률 500% 부여	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(마포구 상수동 355-2번지 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 함)
건축물 용도구분	• 15% 이하(주1)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	• 주거 : 비주거 = 94.31% : 5.69%		
주택 건설 기준	• 공공임대주택 : 전용 45㎡ 이하 • 민간임대주택 : 전용 60㎡ 이하	• 공공임대 : 공공지원민간임대 = 28.67% : 71.33% (27세대) (68세대) • 공공임대주택 : 27세대(28.67%) - 17㎡형, 19㎡형, 30㎡형, 31㎡형 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: 68세대(71.33%) - 17㎡형, 19㎡형, 30㎡형, 31㎡형		
건축물 형태	•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 효 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	• 에너지 효율건축물(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) • 친환경 건축물(우수등급 이상)		
주민공동시설	•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㎡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	• 100.10㎡ 계획(지상2층, 공용세탁실)		

주1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1 준용